서 울 특 별 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391-4/ 전송 731-6795

문서번호 주개 58531 - 2312

시행일자 1993.10.26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주택국장	전결	
주택개량과장		
개량 2 계장		
기안	임 성 규	협조

제목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 및 주민공람공고

1. 우리시관내 동대문구 청량리동 822번지일대(월곡시민아파트)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코자,

2. 도시계획법제11조(도시계획입안)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입안하고, 같은법 제16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본 대 조 필

가. 공고내용 : 공고안 참조 (별첨)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지 게재(2종의 일간지에 조간, 석간 또는 1일이상 시차를 두어 게재)

다. 공람장소 : 동대문구주택과

라. 공고예산

1) 예산액 : 1,636,800원

2) 산출근거 : (3단×8cm×31,000원×2개지)×1.1 = 1,636,800원

3)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사무비, 사무관리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4) 지출방법 : 공고후 한국언론회관 청구에 의거 직불

첨부 1. 공고안 1부.

2. 도시계획입안도서 각1부. 끝.

(제 2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신문게재의뢰

1. 별첨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공고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공고안 참조 (별첨)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지 게재(2종의 일간지에 조간, 석간 또는 1일이상 시차를 두어 게재)

다.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주택과

라. 공고예산

1) 예산액 : 1,636,800원

2) 산출근거 : (3단×8cm×31,000원×2개지)×1.1 = 1,636,800원

3)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사무비, 사무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4) 지출방법 : 공고후 한국언론회관 청구에 의거 직불

첨부 1. 공고문 3부. 끝.

주 택 개 량 과 장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개발과장

제목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입안 보고

1.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입안하고 주민의견청취코자 별첨과 같이 공람공고하였기 그 (안)을 보고합니다.

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나. 공람기간 : 1993.10.27~ 1993.11.10.(14일간)

첨부 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관련서류 각1부.

2. 공고안사본 1부. 끝.

(제 4 안)

수신 동대문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1. 귀구관내 청량리동 82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코자 도시계획법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였음을 통보하니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참고하고,

2. 관계서류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기 바라며, 공고문 사본을 구청 및 동사무소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결과를 '93.11.11.까지 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보고할 것.

첨부 1. 공고문 사본 2부.

2. 도시계획안 도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원본대조필

접수	1993. 10.	113
담당자	심사	담당관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3- 호

도시계획안(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공람공고

1. 우리시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2항,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안 내용을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공람합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3년 10 월 27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 본 대 조 필

가. 공람기간 : 1993.10.27. ~ 1993.11.10.(14일간)

나. 도시계획안

○ 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

지 구 명	위 치	면적(㎡)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청량리 제 1	동대문구 청량리동 822번지 일대	6,669	동대문구 주택과

다.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都 市 計 劃 立 案 調 書

1. 目　的

老朽된 市民아파트를 住民要求대로 住居環境改善地區로 指定하여 劣惡한 住居環境을 改善코자 함.

2. 要求內容

원본대조필

蓮番	地區名	對象建物(棟)	家口數 (家口)			要請者	同議率(%)
			計	家屋主	貰入者		
1	청량리제1	4	273	180	93	住　民	88.3

3. 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調書

區分	地區名	位置	面積(㎡)	備考
新規	청량리제1	동대문구 청량리동 822일대	6,669	공동주택

淸凉里第1 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

1. 現 況

o 位 置 : 東大門區 淸凉里洞 822番地 一帶

o 土地 및 建物

區 分	土 地 (㎡)			建 物 (棟/世帶)		
	計	國.公有地	私有地	計	有許可	無許可
住民要求	6,669	6,669	0	4	4	0
檢 討 案	6,669	6,669	0	4	4	0

※地區內 별도의 2개동은 "'93서울시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의거 이주 신청하여 철거 예정

o 都市計劃現況

區 分	面 積 (㎡)	備 考
一般住居地域	6,669	

2. 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

地區名	位 置	面積(㎡)	備 考
淸凉里 第1	東大門區 淸凉里洞 822番地 一帶	6,669	同意率:建築物所有者88.3% 土地所有者-국유지

3. 地區指定事由

o 住民要求案 : 본지구는 1969년도에 建立된 老朽된 市民아파트로서 住居環境이 지극히 劣惡한 狀態이므로 都市整備 및 住居環境改善地區로 指定 要望

o 檢討意見 : 住民要求案대로 住居環境改善地區로 指定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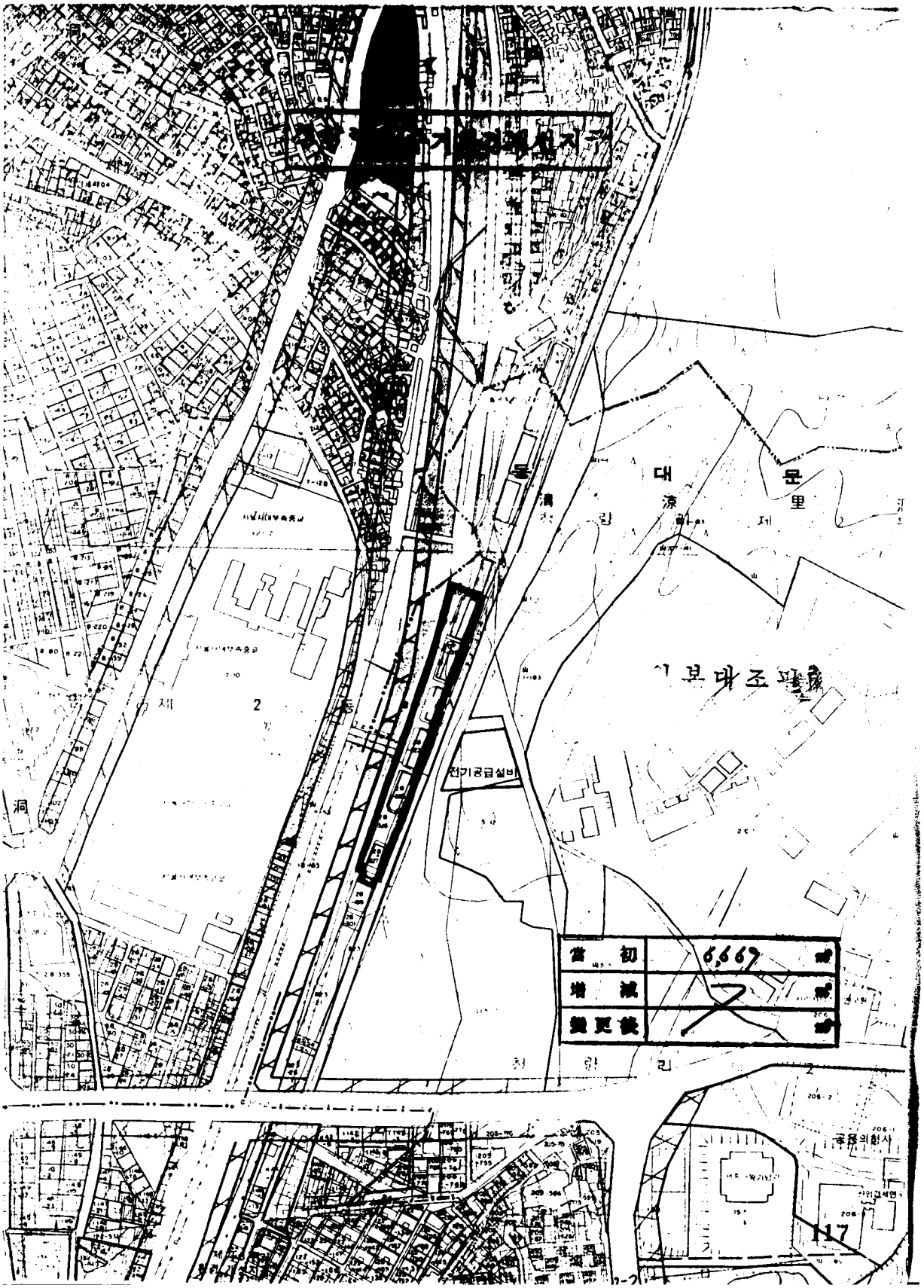

當 初	6,669	㎡
增 減		㎡
變更後		㎡